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73
------	------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장규권의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 사항(시행 2022. 6. 8. / 개정 2021. 12. 7.)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근거 상위법을 목적에 반영함(안 제1조).

다.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안 제2조).

라.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에서 제4조).

마. 경력단절 예방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에서 제6조).

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2. 11. 11 ~ 11. 17.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교육기관·기업 등이”를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성”을 “모성 및 장애특성”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지원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금천구</u>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u> <u>촉진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u> <u>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u> <u>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u> <u>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u> <u>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u> <u>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u> <u>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u> <u>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의</u> <u>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u> <u>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u>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u> <u>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u> <u>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u> <u>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u> <u>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u>경력단절여성등</u>”이란 <u>임신·</u> <u>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u> <u>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u> <u>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u> <u>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u> <u>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u></p> <p>2.“<u>경제활동 촉진</u>”이란 <u>서울특</u> <u>별시 금천구·교육기관·기업</u> <u>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u></p>	<p>제2조(정의) ----- -----.</p> <p>1.----- <u>혼인·</u> <u>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u> <u>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u> ----- -----.</p> <p>2.-----<u>이란</u> ----- ----- -----</p>

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신 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

3.“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

----- 노동자 -----

-----.

4.“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 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② -----
모성 및 장애특성 -----
-----.

제4조(사용자의 책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제7조(지원사업 등) ① -----

- -----
-----.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지원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정된 지원 사업

<신 설>

<신 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②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 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010호, 2019.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49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